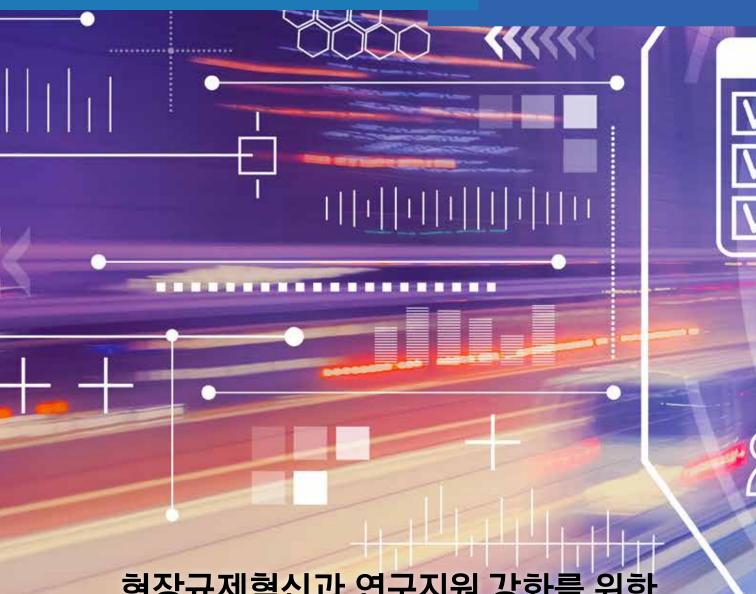


KIOSK 제97호 2022년 9월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 례

소개 · · · · · · · · · · · · · · · · · · ·	3
Hot Issue · · · · · · · · · · · · · · · · · · ·	4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세부추진과제 살펴보기	
한걸음 더 ·······	9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 배경과 선진국 사례	

R&D KIOSK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무료로 배포합니다. 상업적인 용도나 목적을 제외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R&D KIOSK에 사용된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나 목적으로 재가공하실 수 없습니다. 기획ㆍ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조사ㆍ편집ㆍ디자인: (주) 어플라이

TEL. 02-6956-0801

www.aply.biz contactus@aply.biz

소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총 4번 개정되었 으며 2022년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선안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2023년부터 연구현장에서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 자율과 창의의 제고,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성과 제고 촉진



•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취지 정착



•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 강화



• 연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검토 방향

현장의 목소리

~ 2022년 3월

기본지침 마련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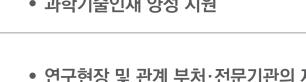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 기술패권 주도 & 선도연구 촉진



• 과학기술인재 양성 지원



2022년 3월

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기본지침 마련 및

관계부처 통보

• 연구현장 및 관계 부처·전문기관의 제도개선 수요



제도개선 관련 연구현장 및 관계 부처 의견 수렴

제도개선위원회 및 관계부처 전문기관 협의

2022년 8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란?

법령 등이나 그에 따른

추진 경과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2022년 9월

Hot Issue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세부추진과제 살펴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연구개발 행정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는 연구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자율과 창의를 제고하고 안정적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취지의 정착, 선도적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 강화, 연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관련된 13개 과제를 확정해 규제를 혁신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취지 정착



① 범부처 규정 점검에 따른 부처별 규정 정비 권고

현황

개선

일부 부처·전문기관 규정에서 혁신법과 그 취지에 맞지 않은 사항을 정하거나 종전 규정을 유지하여 연구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함 혁신법에 맞지 않거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처, 전문 기관, 출연연 자체규정 등을 검토하고 규정 정비 유도

혁신법 중심 규정 정비



② 연구수당 계상의 유연성 강화

현황

개선

연구수행여건 변화에도 최초 협약시계상한 연구수당 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최초 협약 시 계상 후 증액이 불가능한 연구수당에 대하여 단계 시작마다 증액을 허용하여 연구수당 계상의 유연성 강화

전체 연구기간 내 매 단계 시작마다 연구수당 증액 가능

③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3책 5공 완화

현황

개선

공무원 신분의 연구자의 경우 과제를 선택하기보다 조직 업무분장에 따르게 되므로 실효성이 낮으며 유사한 성격의 출연연 기본사업은 3책 5공 제외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출연연 기본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3책 5공 완화

3책 5공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경우 최대 5개(책임자로는 3개) 수행가능

소관 업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출연연의 기본사업과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3책 5공에서 제외

④ 출연연 기본사업 수행 시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현황

개선

출연연 기본사업은 과제 수행 외에 기관 운영을 위한 비용도 필요하지만 주요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비용(행정직 교육 훈련 비용, 차량유지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목 모호

해외 분원 운영 시 파견 인력의 해외 체재비 등에 대한 연구비용도 부재

출연연 기본사업은 기관 공통비용 세부 용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본사업 수행을 위한 해외 파견 비용 계상도 허용

출연연의 자체규정에 따라 기관 공통비용을 사용

2022년 9월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 강화



①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현황

불명확하여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우수한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도 체재비 등 유치 장려를 위한 비용 사용 근거가 개선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에 대한 유치 장려금 및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 근거 신설

해외 연구자 유치장려금, 국내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항목 신설

② 사회문제 해결 등 수요자 참여 국가연구개발의 연구비 사용 편의 제고

현황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등의 경우 기획·평가 과정에서 수요자(일반 국민 등 비전문가) 참여가 필요하지만 해당 참여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급 근거는 모호

비전문가인 수요자 참여에 대한 비용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수요자 참여 연구개발 연구비 사용의 편의성 제고

개선

시행령에 수요자 참여에 대한 비용 사용 항목을 명시

③ 민간 협업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

현황

개선

성장 지원이 필요한 초기 중견기업도 기존 중견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동력 확보 지원

일정 매출액 이하의 초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70% 이하에서 75% 이하로 상향

④ 보안책임자 및 보안교육 명시를 통한 연구보안 강화

현황

개선

혁신법 개정을 통해 보안대책에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나, 하위규정(시행령)에 관련 사항 반영 미비



연구개발기관이 보안대책 수립 시 보안책임자 지정 및 보안 교육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에 명시

연구개발기관이 보안책임자 지정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

3

연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현황

개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2008년 이후 14년간 상승없이 유지 (월별 학사 100만 원, 석사 180만 원, 박사 250만 원)

물가 상승 등에도 변화가 없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금액을 과정별로 상향 조정하여 학생연구자 연구몰입 지원

과정별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추진 학사 100만 원 → 130만 원, 석사 180만 원 → 220만 원, 박사 250만 원 → 300만 원

② 제재처분 관련 기준 명확화 및 합리화

현황

개선

1억 원 초과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 가중 대상이 위반금액 전체인지, 기준금액(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인지 불분명

제한된 제재처분 감경 범위로 인해, 위반행위별 경중과 다양성을 고려한 합리적 제재 곤란

제재부가금 가중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액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재처분 감경범위를 제한하는 '2분의 1' 문구를 삭제 하여 감경 재량을 확대

사례별 경중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재부가금 부과액 감경 재량 확대

2022년 9월 제97호



개선

일부 연구개발기관에서 증명자료 보관 규정을 오해하여 여전히 불필요한 종이 문서를 보관

불필요한 종이 문서 보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전자화 문서의 보관의무 면제를 명시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전자화문서에 대해서는 보관 의무 면제

④ 이해충돌을 고려한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개선

연구기관 자체규정 마련 지원을 위한 연구윤리 통합 가이드를 마련 및 배포하였으나 이해충돌 예방·관리 내용 부재

윤리 가이드라인에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연계

연구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내용, 관계 법령 해설 제시

⑤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대상에서 출원 특허 제외

현황

개선

기술변화 및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 재산출원 전략이 구사(취하-재출원 등)되고 있어 특허 출원을 포기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지식재산 전략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등록 전 출원 지식재산은 중앙행정기관 승인 없이 포기 허용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대상 축소(출원·등록 → 등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2022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에서는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을 14년 만에 상향 추진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상향, 물가 상승 등 환경은 변화하였지만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2008년 이후 변화가 없어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기준 상향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 상향의 배경과 더불어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의 근거로 참고할 만한 대학원생 재정 지원 우수 사례인 미국과 한국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걸음 더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 배경과 선진국 사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대한 인식조사

• 조사대상 : 학생연구자 및 일반연구자 총 6,051명 응답

• 조사결과 : 현장에서도 학생인건비 기준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적정함	상향 필요	하향 필요	모름	합계
학생연구자	643명	2,560명	8명	334명	3,545명
일반연구자	1,312명	734명	198명	262명	2,506명
합계	1,955명 (32.3%)	3,294명 (54.4%)	206명 (3.4%)	596명 (9.9%)	6,051명 (100%)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상향 내용

학사 석사		박사
100만 원 → 130만 원	180만 원 → 220만 원	250만 원 → 300만 원
3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

대학원생 재정 지원 및 조교 제도

• 등록금 면제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재정 지원의 가장 큰 요소가 등록금 면제로 이공계와 대부분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은 등록금 면제 지원을 받음

미국

등록금 면제는 소수 이공계 대학(과기원) 외에는 거의 없음

한국

• 재학 비용

학부나 대학원 모두 재정 지원 결정 요소가 비용 대비 가용예산이므로 연간 재학 비용 정보를 항목별로 공시함

등록금 정보 외에는 재학 비용 관련 정보 제공 없음

• 조교 근무 시간

대학원생은 기본적으로 학업과정 학생 이므로 주당 최대 조교 근무 시간을 20 시간으로 책정함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무 시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음. 다만 교육부의 2018년 대학원생 조교 복무협약서 가이드라인에는 조교 복무 시간 명시함

• 인건비 수준

장학금이나 조교 수당은 대학 소재 지역 물가 수준과 대체로 연동되며, 주요 대학의 경우 실제 해당 지역 주민의 평균 지출 수준의 70% 규모임.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저 인건비를 대학 차원에서 정해 공시하고 있음

오랫동안 최대 석사 월 180만 원, 박사 월 250만 원 유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해 극소수의 기관을 제외하고 정해놓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제97호 2022년 9월

